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7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

발 의 자 : 이창섭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박기열·최관술·남재경·성중기·
우형찬·서영진·박진형·박운기·
이윤희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바,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위탁 한 번의 갱신과 조례상 위탁 연장 횟수를 일치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운영의 위탁)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장은 1회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10조(운영의 위탁)④ 위탁기간은 3년 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 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 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운영의 위탁)④ 위탁기간은 3년 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 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 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연장은 1회에 한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이창섭